

국제영재교육원 설치·운영에 관한 규정

제 1 장 총 칙

제 1 조 (목적 및 관련법) 이 규정은 국제영재교육원(이하 “교육원”이라 한다)의 설치 및 운영·관리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국제영재교육원의 설치는 “교육기본법 제 19조”와 “영재교육진흥법 제 1조”에 의거한다.

제 2 조 (조직) 본 교육원의 조직은 국제영재교육 증진을 위해 이와 관련된 장·단기 정책을 기획하고 구체적 사업 수행을 위한 것으로, 영재교육지원협의회와 영재교육대상자선정심사위원회를 두며, 기획연구부, 교무부, 행정부를 두고 운영한다.

제 2 장 구 성

제 3 조 (교육원장 및 조직) 교육원장과 조직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.

1. 교육원장 : 1명
2. 교무부장 : 1명
3. 기획연구부장 ; 1명
3. 행정부장 : 1명
4. 조 교 : 약 간명

제 4 조 (자격 및 임무) 교육원장과 부장은 다음 각 호의 자격과 임무를 수행한다.

1. 교육원장(이하 “원장”이라 한다)
 - 가. 원장은 총장이 임명한다.
 - 나. 원장은 교육원의 업무를 통괄한다.
2. 부장
 - 가. 부장은 원장이 임명한다.
 - 나. 각 부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 - 1) 기획연구부장
 - 가) 사업계획의 수립 및 결과평가
 - 나) 학술모임의 개최
 - 다) 영재교육의 이론과 실제의 연구
 - 2) 교무부장
 - 가) 교육과정 운영
 - 나)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
 - 다) 교수-학습 및 평가 자료의 개발
 - 라) 교육기자재 확보
 - 마) 수업의 실시
 - 3) 행정부장
 - 가) 학사관리 업무
 - 나) 사무 및 회계 업무
 - 다) 기타 사업지원업무

제 3 장 사 업

제 5 조 (사업) 본 교육원은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.

1. 인문학(문학, 언어) 분야의 인재 발굴 및 양성
2. 언어 영재교육 중 외국어의 이론, 연구, 개발
3. 글로벌리더십 영재 발굴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
4. 영재교육에 관련된 교육과 연구사업
5. 기타 영재교육에 관련한 전국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사업

제 4 장 위 원 회

제 6 조(위원회) 본 교육원은 다음의 위원회를 둔다. 위원회의 명칭과 업무는 각 호와 같다.

1. 영재교육대상자선정심사위원회(이하 “심사위원회”라 한다)
 - 가. 영재교육대상자선정심사위원회의 위원들은 원장이 선임한다.
 - 나. 심사위원회는 위원장(원장)을 포함한, 교내외전문가, 교사 등으로 구성하며, 10인 내외로 한다.
 - 다. 심사위원회에서는 영재교육대상자의 선정, 추천에 대한 심의를 진행한다.
 - 라. 심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, 당연직은 그 직의 임기까지 한다.
2. 영재교육지원협의회(이하 “지원협의회”라 한다)
 - 가. 영재교육원 운영의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
 - 나. 영재교육원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
 - 다. 영재교육원의 운영지침의 개폐에 관한 사항
 - 라. 기타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 - 마. 지원협의회 구성은 다음과 같다.
 - 1) 지원협의회는 원장, 행정부장, 담당교사를 당연직으로 하고 위원장은 원장이 된다.
 - 2) 당연직 이외의 위원은 외부 전문가, 교사2인, 학부모2(1)인을 원장이 위촉하고, 임기는 당해 연도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.
 - 3) 지원협의회의 10명 내외로 구성한다.

제 5 장 학생선발 및 교육내용

제 7 조 (학생의 선발 및 학급편성) 교육원의 학생선발과 교육내용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.

1. 학생의 선발은 매 학년말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그 대상자는 초등학생 및 중학생으로 한다. 선발시기와 전형방법은 지원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원장이 따로 정한다.
2. 교육원의 교육운영 등
 - 가. 본 교육원에는 정치, 외교, 교육, 경제학급을 둔다.
 - 나. 각 학급의 정원은 20명 이내로 한다.
 - 다. 각 반의 교육과정은 지원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원장이 따로 정한다.
 - 라. 영재교육원의 수업은 학기 중 출석 수업과 원격교육, 방학 중 국·내외 연수교육으로 이루어지며, 그 운영은 지원협의회를 거쳐 원장이 정한다.
 - 마. 원장은 각 분야별 부장의 책임 하에 학생생활기록부를 작성 관리하며 그 사본을 학생의 소속 학교에 통보할 수 있다.

제 6 장 보 칙

제 8 조 (기타) 기타 사업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에 따라 지원협의회
의결을 거쳐 원장이 정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07년 12월 1일 시행한다.

※ 교육기본법 제 19조 (영재교육)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문·예술 또는 체육 등의 분야에서
재능이 특히 뛰어난 자의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·실시하여야 한다.

※ 영재교육진흥법 첨부참조